

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450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4505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가단2031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15. 12. 10.

판결 선고 2016. 1. 2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가단2031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의 2014.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4. 8. 19. 접수 제2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춘언

판사이경호

판사오대훈

별지